-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 정 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란에서는 관련된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등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위 암

직업성 암 ⑥

- 서울고법 1995. 2. 14. 선고, 94구6163 판결
-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 참조판례 서울고법 1992. 9. 24. 선고, 92구1966 판결

판결요지

평소의 질병 또는 발병요인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도한 업무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유발된 경우 공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교통사고 조사업무와 방범순찰대장 등 열악한 근무조건하에 있던 경찰관이 평소 폐결핵과 악성임파종을 앓다가 위암 및 전이성 췌장암으로 사망한 경우 이러한 사망원인과 그의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결이유

1. 처분의 경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소외 조한이 1992. 3. 31 퇴직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후인 같은 해 8. 20 위암 및 전이성 췌장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 및 조합의 처이던 원고가 위 조한의 사망원인이 된 질병이 공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발병 악화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

여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조한의 사망을 초래한 질병의 발생원인이 공무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부결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위 조한이 30여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함에 있어 각종 경비업무, 야간근무 등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1986년경 중증의 폐결핵을 앓게 되었으나 경찰업무의 특성상 충분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계속하여 교통사고처리 및 통계업무, 방범순찰대 소대장, 각종 집단시위 및 사태진압과 86아시안게임 및 88서울올림픽 대회의 경비업무 등을 수행해 오다가 이로 인해 누적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이기지 못하여 1988. 1경 소화기계통인 십이지장부위에 악성암파종이 발병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된 과중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위 질병이 계속 진행되어 1991. 9경에는 2차원발위암으로 판명되었으며, 그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던 중 위암에 의한 복부암종증, 장마비, 간췌장전이 및 전신수척 등의 합병증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위 조한의 사망은 공무상의 사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상의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 제61조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상질병 또는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에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가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대상인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의 하나로 그 제8호에서 평소의 질병, 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 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이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또는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와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들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 뿐만 아니라 평소의 질병 또는 발병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그 질병이나 발병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질병의 증상을 자연적인 진행정도 이상으로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질병을 유발한 경우에도 공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조한의 사망원인이 된 위암 및 전이성췌장암이 공무상질병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사망경위서), 갑 제8호증(사망진단서), 갑 제9호증(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갑 제10호증의 1내지 3(각 입퇴원기록지), 갑 제11호증(진료기록), 갑 제12호증(건강진단카드) 갑 제13호증(근무상황부), 갑 제14호증(인사기록카드)의 각 기재 증인 안의배의 증언,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조한은 1984. 6. 30 경사로 진급한 후 같은 해 7. 23 동부경찰서로 발령받아 1986. 1. 25까지는 경비와 교통계 사고조반에, 그 다음 날부터 같은 해 8. 13까지는 군자파출소장으로, 그 다음 날부터 1987. 2. 12까지는 방범순찰대 소대장으로(그 기간중이던 1986. 9. 20부터 10. 5일까지 16일간은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의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각 근무하였으며, 그 근무기간중이던 1986년도 공무원 건강진단서 폐결핵 중증의 판정을 받고 치료를 통하여 비활동성 결핵으로 그 증상이 개선된 사실, 위 조한은 그 이후 다시 위사판정을 받고 치료를 통하여 비활동성 결핵으로 그 증상이 개선된 사실, 위 조한은 그 이후 다시 위 사고조사반의 반장으로 재직하다가 1988. 1경 새로이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의 증

상이 나타나 진단을 받은 결과 십이지장 부위의 악성임파종으로 판명되어 같은 달 21일 연세의료원 암센터에 입원하여 절제수술을 받음과 아울러 그 치료를 위하여 같은 달 3.16부터 같은 해 7. 27까지 휴직하고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아 일단 종양이 소실된 사실, 위 조한은 그 이후 같은 해 11. 14까지는 경무과 민원봉사실장 보조로(그 기간중이던 같은 해 9. 17부터 10. 2까지 16일간은 제24회 서울하계올림픽대회의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다음 날부터 1990. 3. 1까지는 위 민원실에, 그 다음 날부터 1991. 7. 31까지는 위 사고조사반으로, 그 다음 날부터는 교통과 교통관리계에 각 근무하여 오다가 1991. 9경 추적위투시검사상 위 전정부에 이상소견이 있어내시경 검사 및 조직생검을 실시한 결과 악성임파종이 아닌 위선암으로 2차원발위암이 발병한 것으로 판명되어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병이 계속 진행되었으며, 그 후 입원 및 통원을 반복하면서 대중요법을 시행하였으나 1992. 7경 위암에 의한 복부암종증, 장마비, 간과 췌장전이 및 전신수척 등의 증상이 나타나 계속 악화된 결과 같은 해 8. 20 사망하기에 이른 사실 및 위 조한이 담당한 업무중 교통사고처리업무는 1일 평균 20건을 처리하는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형태이고, 각종 사태진압 등 다중 범죄대처 및 경비업무는 통상 1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부대의 이동 등으로 인하여 도시락으로 1일 평균 2식을 취식할 정도로 열악한 조건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나, 그 밖에 위 조한이 위와 같이 중증 폐결핵을 앓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조사업무, 방범순찰대장 근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근무여건이 특수하고 그 업무내용 및 업무수행량이 위 조한이 건강상태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과로로 인하여 위 조한에게 위암이 발병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과로 등이 원인이 되어 위암이 통상의 진행정도를 넘어 악화하였다는 점은 위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특히 기록에 편철된 가정의학대사전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조한이 앓았던 폐결핵과 암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고, 십이지장부위에 발생한 악성임파종과 위 조한의 사망원이 된 위암과도 직접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위암은 위점막에서 발생하여 점차 발육하면서 주위의 정상적 조직에 장애를 줌과 아울러 혈액이나 림프액의 흐름을 타고 다른 장기로 이전되는 결과 저단백혈증, 탈수증세, 빈혈을 일으켜 전신상태가 몹시 나빠지고 간장이나 신장의 장애를 일으키며, 말기에는 암독소에 의하여 전신의 세포가 약해지는 암악액질 상태가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상 아직 위암의 발병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고, 다만 암유전자의 이상발현 또는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요인등이 암세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을 따름이며, 일단 위암이 발병하면 초기단계에 수술에 의하여 병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악화되는 것이고, 과로와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스트레스가 위암의 발병인자 내지 잠재한 병소의 촉발인자가 된다거나 기 발병한 병중의 촉발인자가 되는지의 여부도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음에 비추어, 앞서 채용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조한의 사망원인이 된 이 사건 위암 및 전이서 췌장암은 그의 공무수행과는 무관하게 발병, 악화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유족보상금지급신청을 거절한 피고의 이 사건부결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